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23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가.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센터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다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 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
 -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역량 및 인프라 구축 강화
 -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제공 사업 등
- 소요예산 : 684,831천원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」 제1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센터로서, 위탁기간 (2010.1.1 ~ 2012.12.31)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- 우리사회 가정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,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¹⁾.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

1) 2010년 전체 1천735만 9천 가구는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지만 1인 가구, 부부 가구 등으로 분화하면서 2035년에 2천226만 1천 가구로 늘어난다. 이 때문에 2010년에 전체의 17.8%인 65세 이상 고령 가구 비중은 2035년에

가정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함.

- 민간위탁 근거는 『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』 제5항 및 『동법 시행규칙』 제6조 제1 및 2항, 『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』 제15조 제1항,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 등에 따른 것임.
-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함.
 - 위탁업무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,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역량 및 인프라 구축 강화,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제공 사업 등이며,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·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,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,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음.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0.5%로 증가하고 23.9%인 1인 가구 비중도 34.3%로 커진다.

1인 가구 비중은 올해 25.3%로 25.2%인 2인 가구를 제치고 가장 비중이 큰 가구 유형이 됐다. 2010년 48.1%였던 1, 2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에 68.3%까지 늘어나게 된다.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3, 4인 가구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형태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. (통계청, '2010~2035 장래 가구 추계' 보고서, 2012.4.26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 1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센터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소파로 4길 6(예장동)
- 시설규모 : 대지 537.2m², 건물353.43m²
(지상2층, 건물준공 '63. 3.19)
- 개소일 : '07.10.11
- 주요업무



-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·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
-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
-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등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 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
 -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역량 및 인프라 구축 강화
 -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제공 사업 등
- 소요예산 : 684,831천원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『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』 제5항 및 『동법 시행규칙』 제6조 제1, 2항
 - 『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』 제15조 제1항 등
 -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: 2007. 7.19 ~ 2009.12.31
(약 2.5년,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)
 - 2차 : 2010. 1.1 ~ 2012.12.31
(3년,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 광역센터로서 자치구 센터 등이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
- 市 직영시 급변하는 사회현상 및 가족형태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유연성있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, 시기적절한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

-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-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, 2항

- 제6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설치·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

- 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』 제15조 제1항

- 제15조 (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-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(저출산대책담당관-7129, 2012. 5.31)